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제 정 2010.09.01
개 정 2011.08.31
개 정 2012.11.02
개 정 2013.11.29
개 정 2014.01.02
개 정 2018.01.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채무증권, 국내상장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중 채무증권,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 구 분 | 조사분석서비스 | 매매체결서비스 |
|------|---------|---------|
| 배점기준 | 70% | 30% |

제4조(평가방법) ①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약정배분기준) ①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약정 배분한다.

1.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상위권으로 평가된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40%까지 약정배분 함. 단, 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25%까지 약정배분 가능
3. 평가 후 실제배분 수행은 익분기에 적용
4. 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정보유출, 주문실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거래중단 가능
5.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를 제외한 채권의 거래 시에는 장외 거래라는 채권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중개업자 이외의 기관과 거래 가능
6. CD, CP, 전자단기사채 거래 시에는 거래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중개업자 이외에 기관(은행 포함)과 거래 가능
7.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배분기준의 예외적용 가능
(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고시 해당사유 명시 필요)
 - 가. 분기별 약정배분 거래금액이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 보다 적은 경우(다만,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은 전기 조사분석평가위원회에서 거래금액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②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약정 배분한다.

1.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상위권으로 평가된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40%까지 약정배분함. 다만,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한도로 함.
3. 평가 후 실제배분 수행은 익분기에 적용
4. 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정보유출, 주문실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거래중단 가능
5.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배분기준의 예외적용 가능(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고시 해당사유 명시 필요)
 - 가. Block Trading 등 대량매매로 인해 약정배분비율의 왜곡이 클 경우
 - 나. 투자자가 별도로 투자중개업자 또는 약정배분비율을 지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다. 공모주 청약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 라. 분기별 약정배분 수수료 총액이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 보다 적은 경우(다만,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은 전기 조사분석평가위원회에서 수수료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③ 제1항, 제2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약정 배분한다.

1. 약정배분기준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함
2. 상위권으로 평가 된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40%까지 약정배분함. 다만,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한도로 함.
3. 평가 후 실제배분 수행은 익분기에 적용
4. 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정보유출, 주문실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거래중단 가능
5.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배분기준의 예외적용 가능(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고시 해당사유 명시 필요)
 - 가. Block Trading 등 대량매매로 인해 약정배분비율의 왜곡이 클 경우나. 투자자가 별도로 투자중개업자 또는 약정배분비율을 지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나. 분기별 약정배분 수수료 총액이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 보다 적은 경우(다만, 거래에 지장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적정한 수준은 전기 조사분석평가위원회에서 수수료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제6조(보관 및 관리) ① 매 분기별로 제4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 분기 실행내역을 각 운용담당부서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선정,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10년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2010년9월1일)

제1조 (시행일) 동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AI본부 및 채권운용본부(소)의 경우 201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적용한다.